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공직자등이 민간부문에 대해 채용, 협찬, 후원 요구 등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간부문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자등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한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위법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최고 벌칙 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함.

청탁금지법상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보호조치 미이행, 불이익 조치, 신고의 방해·취소 강요 등 행위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일관성·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2, 제7조, 제17조, 제23조)

- 1)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를 명시함
- 2) 국가 등의 책무에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를 명시함
- 3)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이 금지되는 10가지 대상 직무를 열거하고, 민간부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저해되지 않도록 4가지 예외사유를 명시함
- 4) 공직자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5) 안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자, 보호조치 위반자 등 형벌 상향(안 제22조)

- 1)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이 받는 형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
- 2)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신분상 불이익

조치, 그 외 불이익 조치,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등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타 반부패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신고자 보호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예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와 공직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을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을”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시키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사업 또는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2. 업무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3. 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부정청탁을 받은”을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③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를 각각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7제2항 및 제6항”을 “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조제7항”을 “제7조제9항”으로 한다.

제21조 앞의 “제5장 징계 및 벌칙”을 삭제한다.

제2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벌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벌칙)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

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제24조 본문 중 “제22조제1항제3호”를 “제22조제2항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 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 수(收受)와 공직자 등이 아닌 자 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함으로 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 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 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u>부정청탁 및 금품등 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 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 야 한다.</u> ③ (생 략) <u><신 설></u>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 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u>공직자등에 대한 부 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와 공 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 청탁을 용인(容認)하지 아니하 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u>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u>) ① 공직 자등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 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 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
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
자·예치·대여·출연·출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
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
도록 하는 행위

2. 검사·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
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
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각종 자문·심의·의결 위원
회의 위원, 시험·선발 위원
등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
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
하도록 하는 행위

6.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8.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0.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적인

	<u>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사업 또는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u> 2. <u>업무의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u> 3. <u>업무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u> 4. <u>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u>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u>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5조의2제1항의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u> ④ <u>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등의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 ⑦ (생략)

⑤ 제2항과 제4항 -----

--.

⑥ -----

제2항, 제4항 및 제5항 -----

-----부정청탁을 하였거나 받은 -----
-----.

1. ~ 4. (생략)

⑦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⑧ ~ ⑨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생략)

⑤ -----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 4.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

-----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u>제5조</u>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 4. (생략) 제12조(<u>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u>) ----- 제15조(<u>신고자등의 보호·보상</u>) ① (생략) 1. <u>제7조제2항 및 제6항</u>에 따른 신고 2. ~ 4. (생략) 제16조(<u>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u>)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u>제5조</u>,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u>부당이득의 환수</u>) (생략) <u><신설></u>	② ----- ----- <u>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u>-----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u>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u>) ----- ----- 제15조(<u>신고자등의 보호·보상</u>) ① (생략) 1. <u>제7조제2항, 제4항 및 제8항</u>에 따른 신고 2. ~ 4. (생략) 제16조(<u>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u>) ----- ----- ----- <u>제5조, 제5조의2</u>----- ----- ----- ----- ----- 제17조(<u>부당이득의 환수</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	---

	<u>제5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확정 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게 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 을 환수하여야 한다.</u>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 ----- ----- -----	제18조(비밀누설 금지) ----- ----- ----- ----- -----
--- 다만, <u>제7조제7항에</u>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다만, <u>제7조제9항에</u>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u>제5장 징계 및 벌칙</u>	<u><삭 제></u>
제21조(징계) (생 략)	제21조(징계)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장 벌칙</u>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u>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 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 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 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u>
1. <u>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 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u> 다만, <u>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u>	

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금에 처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

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6.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생략)

1. 2. (생략)

<신설>

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③ -----
----- 2년 -----
-- 2천만원 -----
--.

1. 2.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

--. -----

-.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

②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 3. (생략)

⑥ · ⑦ (생략)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22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

-----.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양벌규정) -----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제2항제

4호-----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연 락 처	(044) 200 - 7702